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5298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강화석

청 구 원 인

. 소외 B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가. 소외 B은(이하 'B'이라고 합니다) 보유중이던 경상북도 영덕군 C 임야 2,38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 1. 29. 영덕군과 보상금 736,610,000원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2. 19. 이 사건 부동산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37,886,600원의 손실보상협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함께 774,496,600원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나. B은 상기 계약에 따라 2020. 3. 19. 이 사건 부동산을 영덕군에 소유권이전하고 2020. 11. 10. 원고 산하 영덕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06,736,680원을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에 영덕세무서장은 2021. 3. 2. B에게 2021. 3.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15,100,52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와 같이 B은 자신이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229,617,390원(가산금 포함)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바, 그 명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습니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229,617,390원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4호증 B 체납유무조회)

<표1>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2021. 10. 14. 현재)

(단위: 원)

세목	귀속 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2020	2020. 3. 31.	2021. 3. 2.	2021. 3. 31.	215,100,520	229,617,390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항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착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

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 1) 후술하는 바와 같이 B이 사해행위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0. 11. 6.입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이 영덕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20. 3. 19.의 말일인 2020. 3. 31. 성립되었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은 B이 영덕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20. 11. 10.이고 영덕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한 날은 2021. 3. 2.경입니다.
- 2) B은 2020. 1. 29. 영덕군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후 2020. 2. 3. 그 계약에 따른 보상금 736,61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0. 1. 29.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20. 2. 3. 토지 손실보상금까지 수령한 상태로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은 물론, 2020. 3. 19. 영덕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나아가 B의 양도소득세 신고나 영덕세무서장의 부과처분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부동산의 증여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사해행위취

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3)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 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B은 영덕군에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20. 2. 3.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736,610,000원을, 2020. 2. 20.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보상금 37,886,600원 합계 774,496,600원을 본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D거래내역).

나. B은 수령한 보상금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을 118,000,000원의 매입가로 구입하고 잔여금을 인출하여 본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금하고 피고에게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E조합거래내역).

다. 그리고, 상기 보유중이던 별지 목록 부동산을 2020. 11. 6.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11. 6.접수 제11618호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마쳐주었습니다(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별지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사해의사

가. B은 2020. 1. 29.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계약을 작성하고 2020. 2. 3.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수령하였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성립되어 확정될 상황인 2020. 1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나. 2020. 11. 6. 당시 B은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조세채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곧 확정까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재산현황표). 즉 B은 보유현금 대부분을 현금 인출하여 적극재산을 은닉하였고, 별지 목록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부족한 상황임에도¹⁾ 별지 목록 부동산 증여한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다.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B이 영덕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성립되어 고지가 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물론 B의 아들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내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판결 참조).

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모두 인정 내지 추정되므로,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등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별지 부동산

1) B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부동산 외에 사해행위 당시 보상금 수령계좌 잔액이 102,296,156원이나, 이 사건 조세채권 229,617,390에 부족하였습니다.

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가액배상

피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수증한 후, 2021. 6. 22. 근저당권 설정계약(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부동산의 가액 118,000,000원²⁾의 지급을 청구합니다³⁾(갑 제8호증 별지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사해행위를 안 날

B의 양도소득세 채납발생일은 고지납부기한의 익일인 2021. 4. 1.로 채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을 위하여 원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1. 6.경 B를 채납자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

2) B이 2020. 2. 10. 별지 목록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인 118,000,000원입니다(갑 제8호증 별지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지,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부동산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영덕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다세대주택 164.61㎡

2층 다세대주택 164.61㎡

3층 다세대주택 164.61㎡

4층 다세대주택 164.61㎡

5층 다세대주택 164.61㎡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북도 영덕군 대 444㎡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5.96㎡

4. 대지권의 표시

1소유권대지권 444분의 55.166 ㎡

